

## 2025년 대구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협력·상생 밸류체인 컨소시엄 지원 기업 모집 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협력상생 밸류체인 컨소시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 1 지원개요

- (지원목표) 성장단계별 기업군간의 밸류체인 공급망 확대 및 동반자적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협력 및 상생을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원규모) 2개 컨소시엄(총 4社정도), 컨소시엄당 최대 80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대구지역 내에 소재\*하고 대구지역 주력(주축)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개사 이상의 협업체를 구성한 컨소시엄
  -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이 대구지역 내에 소재(지방비 납세증명이 가능한 경우)
  - \*\* 대구지역 주력(주축)산업 :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 의료기기  
(업종분류 : 대구지역 주력(주축)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참고)
- ※ 지원제외 : 레전드50+ 2.0 지원기업 등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6개월간)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형태	패키지 지원 (기업별 총 지원금액 내에서 기술역량강화, 기술사업화 패키지 구성)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업수	2개 컨소시엄 (4社 정도)
지원금액	컨소시엄 당 80백만원 이내 ((기업당)지원금 40백만원 정도)
중점지원군	- (기술역량강화) 지역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및 기술 확보 지원에 적합한 기업 → 전후방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등 - (기술사업화)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연계지원 및 제품사업화 지원에 적합한 기업 → 기술력보유 기업과 생산능력 보유 기업과의 연계협력 지원 등
선정방법	신청기업에 한해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협약방식	협약 (대구TP - 주관기업 & 참여기업)
지원기간	협약일 ~ 2025년 11월 15일

※ 컨소시엄 및 기업당 지원금액 등은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2 상세 프로그램 내용

- 기술개발중심형 : 기술역량강화(필수) + 기술사업화(선택)
- 생산중심형 : 기술사업화(필수) + 기술역량강화(선택)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기술역량강화	기획지원	기술/시장 동향 분석,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술이전	우수 공급 발굴 및 매칭, 기술평가 등
	기술지도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등
	장비지원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지원 등
	인증 시험분석	제품인증, 신뢰성, 표준화, 시험분석, 품질인증 등
	특허지원	특허·상표 출원, 특허 로드맵, PCT 등
기술사업화	시제품제작	시제품 설계, 시제품제작 등
	제품고급화	개발제품 제품고급화, 기존제품 성능개선 등
	마케팅	인쇄물, 홍보영상,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홍보/광고물 제작, 시장조사 등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바이어 발굴, 신규거래처 발굴 등
	디자인	제품/포장/로고/그래픽 디자인, 브랜드개발 개선 등
	컨설팅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ESG경영 등

※ 선택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 60% 이상을 ‘필수’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것

### ③ 평가방법 및 기준

- (선정절차) 접수된 신청기업 대상 선정평가 진행  
(최종평가) 지원기업 결과물을 토대로 성공 여부 평가
- (평가기준)

(선정)평가항목	(선정)평가지표	배점
1.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목표 · 역량 · 가능성	30점
2. 제품(기술)의 경쟁력	제품(기술)의 차별성, 대체기술 가능성, 제품(기술)의 차별성 등	20점
3. 사업 추진역량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20점
4. 예상사업화 성과 및 기대효과	사업수행을 통한 기업 성장, 사업 결과의 기대효과 등	20점
5.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10점
6. 우대가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3점

(최종결과)평가항목	(최종결과)평가지표	배점
1. 목표의 달성도	수행 목표대비 수행내용, 달성 정도 등	30점
2. 수행 적정성	추진체계 (주관&참여기업의 업무분담 및 협업에 따른 부가가치 등) 적정성 등	30점
3. 추진전략 적정성	예상시장 진입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20점
4. 기대 효과	신규 사업모델의 확장 가능성 및 연계 효과 등	20점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 (최대 3점)

연번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CH)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6	'24년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1

#### 4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허위자료 제출 등)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미비한 경우, 공급기관(업)이 신청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사전 제외(지원 제외, 협약 취소 등)될 수 있음
- (성과조사 등) 선정(수혜)기업은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성과조사 등) 및 추진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자격 요건)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채무 불이행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부실위험	⑤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 ⑥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기타사항	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기업 지원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 R&D 참여제한 중인 경우(대표자 포함)

※ 상세내용은 중소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025.4.4.) 등을 참고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설명회) 2025년 4월 24일(목) 14:00, (대구TP 성서캠퍼스 S6동)

→ 사전신청링크 : <https://naver.me/5tJIBxEk>

사전신청QR코드 →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

공 고	신청서 접수	면담/현장 실태조사	선정평가	협약체결	프로그램 지원/수행	최종평가
공고게시	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기업진단)	발표평가	협약체결	사업시행	최종평가
4. 00	4.00~4.00	5월중	5월중	5월중	협약일 ~11.14	12월중

※ 추진상황에 따라 설명회 등 방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년 4월 17일(목) ~ 2025년 5월 2일(금) 18:00

- (신청접수) 2025년 4월 25일(금) ~ 2025년 5월 2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tech.go.kr/region/rms>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연번	제출서류
1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3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4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22~'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24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국세청 홈텍스 발급)
5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22~'24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각 연도별 기간을 12월 3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하여 발급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발급

6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22~'24년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등 발급 ※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발급
7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8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9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10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 (해당 시)
11	[컨소시엄 구성 기업별]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견적서(항목별 각 2부 이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2	컨소시엄 구성 기업간 최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지분율 합의서 (필요 시, 자유양식)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된 서류로 제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7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3.07.17)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24.02.27)

## 8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지원프로그램	소속부서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협력·상생 밸류체인 컨소시엄 지원	기업지원단 기업육성지원센터	박재원 선임	053-757-3721	jwpark@dgtp.or.kr

- RMS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